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 
보관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 
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 
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 
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 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 
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**신탁업자명 :**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**문의가능 전화번호 :**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####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삼성KODEX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  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  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09. 10. 29 ~ 2010. 10. 28  
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  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증개업자: 대우증권,  
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 
동양종합금융증권, 하이투자증권

### 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7.07	표지  제2조(집합 투자업자 및 신탁업 자)  제48조(수 익자에 한 공고등)	<p>집합투자업자 : 삼성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</p> <p>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 운용주식회사를 집합 를 집합투자업 투자자로 하 자로 하고 통 하고 통홍상하 이은행 서울지점 서울지점을 신 을 신탁업자로 탁업자로 한 한다.</p> <p>① 1~7.&lt;현행과 동일&gt; &lt;신설&gt;</p>	<p>집합투자업자 :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</p> <p>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 식회사를 집합 투자자로 하 자로 하고 통 하고 통홍상하 이은행 서울지점 서울지점을 신 을 신탁업자로 탁업자로 한 한다.</p> <p>① 1~7.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8. 설정 및 설 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 액이 50억원 미 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 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 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 함. 9. 설정 및 설 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 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 인 경우 그 사</p>

		실과 해당 집합 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 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, 존 속하는 동안 추 가로 설정(모 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 함.
		8. 그 밖에 수 익자의 투자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자 정에 의하여 산보관·관리보 자산보관·고서를 교부하 관리보고서를 는 경우 판매회 교부하는 경우 사 또는 지정참 판매회사 가회사를 통하여 또는 지정참가여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의 방 직접 또는 법으로 교부하 우편발송 등의 여야 한다. 다 방법으로 교부만, 수익자에게 하여야 한 전자우편 주소 다. 다만, 수익가 없는 등의 자가 전자우편 경우에는 법 제 을 통하여 89조제2항제1호 수령한다는 의 및 제3호의 방 사표시를 한법에 따라 공시 경우에는 전 하는 것으로 같 자우편에 의하 을 할 수 있으 여 교부할 수며, 수익자가 있다. 우편발송을 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 다.
2010.10.28	제38조(투 자신탁보 수)	<p>②투자신탁보 수의 계산기간(이 (이하 “보수하 계산기간” 이라 한 라 한다)은 제 41조의 투자신 투자신탁분배금 탁분배금 지급 지급기준일(단, 기준일(이하 회계기간 “분배금 지급 기준일” 이라 한 라 한다)을 기 “분배금 지급 준으로 산출하 기준일”이라 한 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 산출하되, 구체 은 다음 각호에 보수계산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호에서 정하는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분배 보수의 인출은 금 지급일로 한다. 지급일로 한다. ④1. 운용보수 ④1. 운용보수</p>

	<p>율: 연 1,000분의 3.3 2. 지정참가회 사보수율: 연사보수율: 연 1,000분의 1.01,000분의 0.5 3. 신탁보수율: 연 1,000분의 0.3 4. 일반사무보수율: 연수율: 연 1,000분의 0.3분의 0.4</p> <p>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) ① 1. 지급기준 ④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자기구가 지수조에 따른 상장구성종목을 교지수집합투자기체함에 따라구가 지수 구성계산되는 이익</p>
--	---

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## 8. 그 밖에 투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 없음

### 4. 집합투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・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#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 - 부합함
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없음
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